

# 法の 교호에 대한 인칭적 제약

김 은 경(서울대, 서어학)

## I. 서 론

법의 교호 *alternancia modal*에 인칭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화용론이 대두되면서 법의 연구가 새로운 방향을 찾고, 특히, 법의 교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인칭과 법의 교호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놓은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서반아어 동사의 법에 관한 해석으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Bello(1981, 334)의 문법에서도 법과 관련된 인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동사는 시제, 법 및 주어의 수와 인칭을 함께 표현하는 품사”라는 정의를 통해서, 법의 어미변화 *inflexiones*가 인칭과 함께 동사의 활용상 공존한다는 형태적 특성만이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유사한 설명은 스페인 한림원의 문법(1973, 249)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사는 명사와 대명사처럼 수의 형태소를 소유하고 있고, 인칭대명사처럼 인칭의 형태소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명사 및 대명사와는 달리 시제와 법의 형태소를 소유하는 품사”라고 정의함으로써, 구조문법 이후 사용

---

1) 법의 교호와 인칭요소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놓은 연구 논문은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고, 비교적 상세한 기술은 E. Bustos(1986)의 『서어 화용론 *Pragmática del español*』과 T. Takagaki(1984)의 연구 논문, “Subjunctive as the Marker of Subordination”(Hispania, 67, pp. 248~256)에나 일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 밖에, M. L. Rivero(1979b)의 “La concepción de los modos en la gramática de Andrés Bello y los verbos abstractos en la gramática generativa”(recogido en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del Español*, Madrid, Cátedra, pp. 71~85)에서 간접적인 참조가 가능하다.

되는 형태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을 뿐, Bello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4가지의 서로 다른 문법적 범주들은 각기 독립된 형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은 Porto Dapena(1987, 17)의 형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제와 법, 수와 인칭이 각각 동일한 형태소로 표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   |               |   |                 |
|-----|---------|---|---------------|---|-----------------|
| (1) | estudia | — | ba            | — | mos             |
|     | base    |   | morfema       |   | morfema         |
|     |         |   | modo-temporal |   | número-personal |

또한, (1)과는 달리, 어느 한 형태소가 외형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는, (2)와 (3)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제와 법의 형태소 또는 인칭과 수의 형태소가  $\emptyset$ 로 표현될 수 있다.

- (2) estudi —  $\emptyset$  — é (1ra. pers. sing. de pretérito indefinido)  
 (3) estudi — e —  $\emptyset$  (1ra. y 3ra. pers. sing. de presente de subj.)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적 분석만으로는 법과 인칭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법의 교호에 있어서 인칭이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생각은 형태적 분석의 차원을 넘어서, 문장 분석 및 문장의 발화 상황에 대한 화용적 분석에서나 가능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교호 자체도 무차별적으로 모든 종속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인칭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4) No cree que esté allí su hermano. (Fernández Ramírez, 1986, 328)  
 (5) No cree que está allí su hermano. (*Ibid.*)  
 (6) No creo que esté allí su hermano.  
 (7)\*No creo que está allí su hermano.

Creer동사는 종속문에서 접속보다는 직설법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정 negación의 요소가 개입하면, (4)의 경우와 같이, 접속법을 이끄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5)와 같이 직설법을 취한다 해도 문장의 문법성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4)는 “*acaso no está*”로 되고, (5)는 “*no lo cree, pero está*”와 같은 연역이 가능하다(Fernández Ramírez, 1986, p. 328 참조).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6)과 (7)의 예문처럼, *creer* 동사가 1인칭을 취하여 문장의 주어 *sujeeto de la oración*와 발화자 *hablante*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종속문에서 접속법을 취하는 (6)은 정문이 되지만, 직설법을 취하는 (7)은 비문이 된다. 즉, (4)와 (5)의 예문처럼, 발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종속문의 명제에 대한 진위의 판단이 발화자에게 일임되고, 결과적으로 발화자는 종속문에 직설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명제에 대한 믿음 *creencia* 또는 확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5의 경우), 또 이와 반대로 접속법을 통하여 그러한 확신 내지 믿음을 유보할 수도 있지만(4의 경우), (6)과 (7)처럼 발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중 하나의 판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은 (6)의 경우와 같이 주어의 의구심이 반영되는 접속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교호와 관련된 인칭 요소의 개입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종속문에서 이루어지며, (4)와 (5) 및 (6)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대칭적인 법의 교호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7)과 같은 문장을 비문으로 배제하는 통사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II. 인칭과 법의 교호에 대한 화용적 해석

Bustos(1986, 222)에 의하면,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모두 법의 교호가 이루어지는 구문에서 법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칭이다. 즉,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1인칭 구문에서는 법의 선택이 제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8) *No opino que sea el momento apropiado. (Bustos, 221)*

(9)\**No opino que es el momento apropiado. (Ibid.)*

(10) *El secretario no opina que sea el momento apropiado. (Ibid.)*

(11) *El secretario no opina que es el momento apropiado. (Ibid.)*

예문 (10)과 (11)처럼 주절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화용적 구조를 갖는다.

(10') Creo que X no opina A y no sé si A.

(11') Creo que X no opina A y creo que A.

(10')와 (11')에서 알 수 있듯이, (10)과 (11)의 주절의 주어(X)가 발화자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속문의 명제(A)에 대한 발화자의 믿음은 논리적으로 두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주절의 주어와 발화자가 일치하는 예문 (8)과 (9)의 화용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Yo no opino A y no sé si A.

(9') Yo no opino A y creo que A.

(8')의 경우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지만, (9')에서는 명제 A에 대해 발화자는 의구(no opino A)와 믿음(creo que A)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문장 자체를 논리적 모순에 빠뜨리고 있다.

Bustos는 아울러 이와 같은 현상이 부정문에서 법의 교호가 이루어지는 creer, contar, explicar, admitir 등의 동사가 유도하는 명사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sup>2)</sup>

그러나, 화용적 해석에 근거한 이러한 인칭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선택이 일정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

2) Bustos(1986, 223)는 법의 교호와 관련된 인칭적 제약이 다음과 같은 구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 (1) Escogeré las que son/sean más interesantes.
- (2) El alumno escogerá las que son/sean más interesantes.
- (3) Aprobaré a todos los que llegan/lleguen a una puntuación suficiente.
- (4) El profesor aprobará a todos los que llegan/lleguen a una puntuación suficiente.
- (5) Aunque sea/es difícil, lo conseguiré.
- (6) Aunque sea/es difícil, lo conseguirá.

그러나, (1), (3), (5)와 같은 구문은 발화자가 주어와 일치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발화상 화용적 제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 (12) No creo que lo saben. (Lope Blanch, 1990, 182)
- (13) No creo que el belga ganó la carrera. (Rivero, 1979a, 41)
- (14) No creo que llegamos a tomar el vaso de vino. (Fernández Ramírez, 1986, 329)
- (15) No creemos que debe considerarse como propósito de la seguridad social. (Togebly, 1953, 55)

Fernández Ramírez는 예문 (14) 및 (15)에서와 같은 직설법의 출현은 혼치 않은 경우이며, 1인칭의 “no creo”는 직설법을 배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린다. Lope Blanch(1990, 182)도 (12)와 같은 문장에서의 직설법에 대해, 의구의 판단 juicios dubitativos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법의 선택에 있어 혼동을 일으킨 화자가 접속법 대신 직설법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Rivero(1979a, 41)와 Bustos(1986, 220)의 경우에는, (13)과 같은 문장도 수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16) No puedo creerme que el belga ganó la carrera.

(17) No lo puedo creer : el belga ganó la carrera.

즉, (13)과 같은 문장은, (16)이나 (17)과 같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이미 사실화된 명제에 대해 화자가 개인적인 의구심을 표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적으로 직설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문 (18)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18) No creo que ‘el belga ganó la carrera’ sea verdadera.

이와 유사한 해석은 Bell(1980, 38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 No creo que el profeta vuelve.

(20) No digo que usted tiene una cara de orangután.

Bell은 (19)와 (20)의 예문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한 말(“el profeta

vuelve” 및 “usted tiene una cara de orangután”)에 대해 명료하게 부인(explicit denial)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예문 (19)와 (20)의 종속문들은 (18)의 경우처럼 따옴표 속에 인용될 수 있는 기정 사실화된 명제이기 때문에 법의 변화없이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칭 부정문에서 직설법이 유도되는 경우는, 1인칭 긍정문에서 접속법이 유도되는 경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1) Creo que no vuelva. (Gili Gaya, 1961, 135)

(22) Yo sí creo que Dios no exista. (Takagaki, 1984, 254)

Takagaki(1984, 254)는 예문 (21)과 (22)에서 화자는 종속문의 명제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문장의 동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는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Takagaki도 수사적 방법(직설법 대신 접속법을 사용함)을 통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모순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고 간주한다.<sup>3)</sup>

그러나, Takagaki의 이와 같은 관점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Gili Gaya(1961, 135)의 정의에 의하면, (21)과 같은 문장은, creer 동사가 ‘완곡한 의심 *duda atenuada*’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의 의미와 일치할 수 있는 법의 선택으로서 접속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creer동사는 실제로 중세 서반아어에서 ‘약화된 믿음 *creencia atenuada*’의 의미로 주로 주관적인 의견 *opinión subjetiva*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접속법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sup>4)</sup>

3) Takagaki(1984)는 Bell(1980)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1인칭 부정문에 나타나는 직설법을 종속문 명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화자의 모순적 감정의 표현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문장들의 문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문들은 화용적 구조가 “creo A y no creo que A”와 같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생성의 원인을 *ad hoc*한 상황에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문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중세 서반아어에서 creer동사의 법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S. Ariyoshi(1981)의 “A Note on the Spanish Subjunctive :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use in the subordinate clause of verbs of belief in *DIALOGO DE LA LENGUA*”(Lingüística Hispánica, Vol. 3, pp. 3~30)에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연구 논문이 확인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중세에는 creer동사가 직설법과 접속법을 거의 같은 빈도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Ca nos creemos que sea provecho de cada un omne...(Ariyoshi, 1981, 5)

(24) Yo bien creo que sea assí. (Ariyoshi, 1981, 7)

(23)과 (24)같이 중세 서반아어에서 발견되는 creer 동사의 용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1)과 (22)의 접속법은 일종의 creer 동사의 의고적 의미로서의 사용(uso arcaico)이거나, Gili Gaya의 정의처럼 creer 동사의 '확신'의 의미가 약화되어 사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Takagaki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어의 확신(yo sí creo)과 종속문의 명제에 대한 의구(Dios exista)를 동시에 느끼는 화자의 모순적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2), (13), (14), (15) 및 (19)와 (20)에서 취해진 직설법은 오히려 종속문의 명제가 표현하는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약화된 믿음' 내지 '의구'라는 의미적 논리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Porto Dapena(1991, 124)는 saber, conocer, estar enterado 등과 같은 인지 동사 verbos de conocimiento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인칭적 제약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25) (Yo) No sabía que habías venido.

(26) (Yo) No sabía que hubieras venido.

Porto Dapena는 예문 (25)와 (26)은 모두 정문이고, 두 문장의 직설법과 접속법은 그 대립이 중화되어 있다고 간주하며, 그 중화의 원인은 주절의 동사와 종속문의 동사가 모두 과거시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언급할 때는 “si”로 이끌리는 의문문을 종속절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간주한다.

(27) No sé si has aprobado.

또한, Porto Dapena(1991, 124, nota 24)는 Bustos(cfr.1986, 200)가 정문이라고 여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문법성을 의심한다.

(28) No sé que Juan tenga menos años que mi padre.

(29) No sé que seas mejor.

## (30) No sé que el coche corra demasiado.

예문 (27)과 같이 의문문을 명사절로 취하는 경우에는, 예문 (18)에서 살펴본 것처럼, “si”로 이끌린 명사절 자체를 일종의 인용절로 간주한다면 얼마든지 종속문에서 직설법이 가능하고 문장 자체의 문법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28), (29), (30)의 문법성을 의심하는 것은 결국 법의 대립이 중화된 (25)와 (26)의 문장에서 (25)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고, (26)이 (25)를 대신해 사용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판단이므로, 법의 대립에 있어 그 변별적 자질을 양성적으로 취하는 접속법의 형태(forma marcada: *hubieras venido*)가 이를 음성적으로 취하는 형태(forma no marcada: *habías venido*)를 중화할 수 있다는 모순적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saber* 동사<sup>5)</sup>는 의미상 Terrell(Cfr.1976, 227)의 분류 중 단정 *aserción*에 해당하는 동사로서, 부정형인 “no saber”는 자동적으로 의구 *duda*에 해당하는 ‘*ignorar*’와 동의어로 접속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25)와 (27)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직설법의 출현이 오히려 문제시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인칭 긍정문에서의 접속법의 사용(예문 21, 22의 경우)과 1인칭 부정문에서의 직설법의 사용(예문 12, 13, 14, 15, 18, 20 및 25, 27의 경우)은 어디까지나 현대 서반아어에 있어 법 체계의 변화 또는 혼란이 야기하거나 특수한 발화 상황——인용 또는 시제적 제약이 있는 경우——이 허용한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화용적 논리 구조에 모순되는(예문 9’참조) 법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독립문에서의 접속법과 인칭 문제

서반아어의 전통문법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이미 접속법이 종속문을 이끄

5) M. L. Rivero(1979a)는 *saber*동사가 *saber que*, *saber si*, *saber+elemento interrogativo*, *saber SN* 및 *saber+infinitivo*의 5가지 구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데, 이 중 *saber+infinitivo* 구문의 *saber*는 *poder*, *deber* 등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verbo modal*”로 간주한다.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 *saber*는 인지동사 *verbo de conocimiento*의 기능이 주기능이라 할 수 있다(Rivero의 “*Saber : hacia una gramática de los términos epistemológicos*” 참조).



는 법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찌기 Vicente Salvá (1830)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르면 접속법은 접속사를 통해 연결된 종속문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에 의존하는 것을 형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주절의 동사는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루어 짐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종속문에 쓰이는 접속법 뿐만 아니라, 독립문에 나타나는 접속법을 설명하는 데도 자주 응용되고 있다.

(31) (Le digo que) Pase.

(32) (Le digo que) No vayáis al río.

예문 (31)과 (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령을 나타내는 독립문에 있어 접속법을 유도하는 decir동사(‘ordenar’의 의미)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더러, 실제로 첨가된다 해도 문장의 의미와 문법성에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33) Ojalá vuelva pronto. (Gili Gaya, 1961, 141)

(34) ¡Viva el Presidente! (*Ibid.*)

(35) Dúrase en tu repaso. (*Ibid.*)

예문 (33), (34), (35)의 경우에는 (31)과 (32)와 달리, 화자의 ‘희구’나 ‘소망’을 나타내는 원망문인데, Gili Gaya(1961, 141)에 따르면, 이러한 문장들은 내재하는 원망적 특성 carácter desiderativo 때문에 외형적으로 원망동사 verbos desiderativos(querer, desear 등)가 구태여 주절에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심리적 종속 subordinación mental이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사 que를 통하여 구체화될 수도 있다.

(36) Que se alivie.

(37) ¡Que pase!

명령의 의미를 표현하는 독립문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생략된 동사를 가정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문장들이 종속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Navas Ruiz (1986, 31)는 그와 같이 생략된 주절을 짐작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정이라고 본다.

(38) (Mando que) No vais al rfo.

(39) Le decfa ; (Le digo) que pase el primer cliente.

예문 (38)은 직설법 문장이지만 실제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39)는 명령문이지만 형식상 인용된 것으로 문장 앞에 이미 “le decfa”라는 문장이 존재한다. (38)과 (39)의 경우에는 각각 “mando que”와 “le digo”를 생략된 주절로 보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반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Navas Ruiz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여겨진다. 즉, (38)의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직설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된 주절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동사가 Bolinger(1974, 464)가 수행이론 hip6tesis realizativa에 입각하여 가정하는 “yo afirmo,” “yo digo,” “yo declaro”와 같은 ‘보고 report’의 동사이거나<sup>6)</sup>, 아니면 Rivero(1979b, 80)가 말하는 verbo dicendi<sup>7)</sup>(verbo de lengua: decir, hablar, comunicar 등)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략된 동사를 “mando”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39)의 경우에도, “que pase...”의 문장은 이미 독립문이 아니며, 주문장인 “Le decfa”와 문장 부호(;)를 통하여 병렬복합문 oraci6n yuxtapuesta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생략된 주절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릇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문을 포함한, ‘원망’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법 독립문에서 생략된 동사를 가정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Rivero(1979b, 76)는 이 경우 시제적 제약이 있다는 주장을 편다.

(40) Ordeno que lo haga.

(41)\*Ordeno que lo haya hecho.

(42)\*Ordeno que lo hubiera hecho.

6) Bolinger(1974)는 수행이론이 로망스어의 법체계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전통문법상 ‘사실의 전달’을 의미하는 법으로 간주되어온 직설법은 수행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7) Rivero(1979b)가 verbo abstracto로 나열하는 verbo dicendi는 decir, explicar, contar 등의 동사이며, 항상 1인칭 단수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Rivero, 1979b 및 Ross(1968)의 “On declarative sentences,” J. A. Jacobs y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Ginn, pp. 222~272 참조).

예문 (41)과 (42)가 비문인 까닭은 굳이 Rivero의 주장을 언급할 필요없이, ‘명령’이나 ‘원망’을 나타내는 동사의 종속절에는 항상 주절의 시제보다 미래의 형태 *forma posterior*가 와야 한다는 시제일치원칙 *consecutio temporum*을 상기한다면,<sup>8)</sup> 쉽게 증명될 수 있다.

(43) *Hágalo.*

(44)\**Háyalo hecho.*

(45)\**Hubiéralo hecho.*

결과적으로, (40), (41), (42)의 주절을 생략한 명령문에서는, (43)만 정문이 되고 (44)와 (45)는 비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명령이 아닌 순수한 ‘희구’나 ‘추측’을 의미하는 독립문의 경우, 이러한 시제적 제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46) *Ojalá lloviera.*

(47) *Quizá sea él el ladrón.*

Porto Dapena(1991, 49)에 의하면, 예문 (46)은 “*Ojalá llueva*”와 ‘가능’(+*probabilidad*)/‘불가능’(—*probabilidad*)의 대립 관계에서, 불가능한 현재의 소망을 나타낼 뿐이며, 두 형태가 시제적으로 대립하지는 않는다.<sup>9)</sup> 따라

8) 스페인 한림원 문법(*Esbozo*, 1973, 519~20)에 의하면, 주절의 동사가 명령, 청원, 소망을 의미하는 경우,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주절 동사의 시제보다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만이 가능하다. M. Suñer와 J. Padilla Rivero(1987)도 다음의 (1), (2)와 같은 시제 배열은 가능하지만, (3)과 같은 배열은 불가능하다고 정의한다.

(1) (— Pas……— Pas)

(2) (+ Pas……+ Pas)

(3) (— Pas……+ Pas)

또한, 이와 같은 배열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한 명령, 청원, 소망의 동사들은 어휘 자체가 “+ posterior” 자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한다(M. Suñer y J. Padilla Rivero의 “*Concordancia temporal y subjuntivo*”, *Hispania*, 70, pp. 634~42 참조).

9) Porto Dapena(1991, 49)는 ‘추측’을 의미하는 아래의 4가지 접속법 형태들을 도표와 같은 대립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Ojalá llueva.  
— Ojalá lloviera.  
— Ojalá haya llovido.  
— Ojalá hubiera llovido.

서, 예문 (46)은 의미상 아래의 예문 (48)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8) Deseo que llueva, pero creo que es improbable.

또한, 예문 (47)은 ‘추측’의 의미를 내포하는 부사(“quizá”)로 인해 유도된 접속법 문장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부사들(acaso, tal vez 등)을 “semi-matrix”로 간주하는 Takagaki(1984, 251)의 이론을 예문 (47)에 적용하여 “quizá”를 준주절로 간주하면, 의미상 (47)과 일치하는 다음의 문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49) Es probable que sea él el ladrón.

또한, (48)과 같은 해석을 지니는 예문 (46)도 “ojalá”를 준주절로 간주하는 경우, 아래의 예문 (50)과 의미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50) Es improbable que llueva.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예문 (46)과 (47)은 접속법을 이끄는 ‘명령’과 ‘희구’의 독립문과는 생략된 주절의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33), (34), (35), (36), (37), (39) 및 (40)의 예문들의 경우에는, “yo ordeno,” “yo deseo” 등의 1인칭 동사 형태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46)과 (47)의 경우에는 “es probable,” “es improbable”와 같은 일종의 무인칭 구문이 생략된 주절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Rivero(1979b, 81)도 발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직설법 구문의 생략된 주어로서 “yo abstracto”를 주장하며, 이 가설을 “según”이나, “en cuanto a”와 같은 전치사구 및 “a decir verdad,” “cambiando de tema”와 같은 일종의 독립분사구문을 통해서 증명한다.<sup>10)</sup>

	+ probabilidad	- probabilidad
- anterioridad	cante	cantara
+ anterioridad	haya cantado	hubiera cantado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하여, cante와 cantara의 대립이 + probabilidad/-probabilidad의 대립이며, 시제에 있어서는 두 형태가 ‘- anterioridad’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 A. Porto Dapena, *Del Indicativo al Subjuntivo: valores y usos de los modos del verbo*, Arco/Libros, p. 49 참조).

(51) Según tú, se tenfa que haber acabado el mundo.

(52)\*Según yo, nos podemos ir.

(53) Juan dijo que, según yo, habría un incendio.

(54)\*Juan dijo que, según él(mismo), habría un incendio.

예문 (51)과 (53)은 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문이 되지만, (52)와 (54)의 경우에는 “según yo”와 “según él(mismo)”를 첨가함으로써 문장의 주어와 화자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갖게 되며 문장 자체는 비문이 된다. 이와 똑같은 검증을 예문 (49)와 (50)에 적용하면, (55)와 (56)은 (51) 및 (53)처럼 정문이 된다.

(55) Es probable que, según yo, sea él el ladrón.

(56) Es improbable que, según yo, llueva.

따라서, (49)와 (50)에서 도입한 무인칭 주절(“es probable”)의 실질적 주어가 결국 “yo”라는 1인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독립문의 법의 교호는 결국 다음과 같은 분포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7) ( Yo digo que ) V ind.

10) Rivero(1979b)는 “a decir verdad,” “cambiando de tema,” “hablando de eso,” 등의 독립분사구문의 생략된 주어를 “yo abstracto”로 간주한다.

- (1) a. A decir verdad, se marcharon enseguida.
- b. Cambiando de tema, vámonos al cine.
- c. Hablando de eso, más vale que te comportes bien.

(1)의 a, b, c의 분사구문들은 모두, “a decir yo verdad,” “cambiando yo de tema,” “hablando yo de eso”로서, 주어인 “yo”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생략된 주어는 다음의 전치사구를 통한 검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2) En cuanto a mí, me puedo ir inmediatamente.
- (3) a. En cuanto a los estudiantes, se pueden ir inmediatamente.
- b.\*En cuanto a ellos, los estudiantes se pueden ir inmediatamente.

(2)와 (3a)만이 정문이고, (3b)와 같은 구문이 비문인 까닭은 “en cuanto a”의 목적어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명사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M. L. Rivero, *op. cit.*, pp. 81~82 참조).

- (58) a. ( Yo ordeno, deseo que ) V subj.  
 b. ( (Yo abstracto) Es (im)probable que ) V subj.

#### IV. 통사적 근거

Bello(1981, 327)는 “종속되거나, 종속될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의 영향이 나 지배로부터 이루어지는 동사의 어미 변화”를 법으로 정의하고, (59)와 (60)의 직설법과 접속법은 각각 주절의 동사인 *saber*와 *dudar*의 영향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Bello는 “종속될 수도 있는 *pueda estar subordinado*”이라고 한 까닭이 실제로 앞서 나열한 것 같은 동사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59) Sé que tus intereses prosperan.  
 (60) Dudo que tus intereses prosperen.  
 (61) (Sé, afirmo, digo que) Tus intereses prosperan.  
 (62) (Deseo que) La fortuna te sea propicia.

법에 대한 Bello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독립문에서의 법의 교호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일치하며, 우리는 이외에도 ‘추측’ 구문의 접속법도 (58b)처럼 확대하여 해석한 바 있다.

한편, Takagaki(1984, 251)는 Bello의 통사적 관점에 근거하여 직설법과 접속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63) *Independency* = *Indicative*  
*Subordenance* = *Subjunctive*

(63)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된 법에 대한 Takagaki의 정의는, 접속법은 반드시 종속문을 이끄는 법이며, 직설법은 종속문이 아닌 모든 경우를 이끈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Mariner(1971, 219)가 지적한 것처럼, “접속법이 종속문의 법이라면, (a) 종속문에는 항상 접속법이 사용되거나, (b) 접속법이 종속문 이외의 문장에서 사용돼서는 안되며, (c) 접속법 자체가 종속문을 이끄는 지표

로 사용되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마지막 조건이 부분적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 두 조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접속법 뿐만 아니라 직설법이 종속문의 법이 된다는 가정을 세운다 해도, 접속법과 직설법이 완전한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기보다는 동사의 어미변화 cambio de inflexiones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미 변화가 두가지 법의 구분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법의 보완적 변이형이 되고마는 모순적 결과가 도출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접속법을 종속문의 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에 대한 Bello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Bello에 의해 이루어진 직설법과 접속법의 구분은 아래의 (64)와 (6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분히 문맥적 분포 distribución contextual에 근거하고 있다.

- (65) a. Sé que tus intereses prosperan.
- b. Sé que tus intereses prosperaron.
- c. Sabemos que tus intereses prosperarán.
- d. Supe que tus intereses prosperaban.
- e. Sabíamos que tus intereses prosperarían.

- (65) a. 

Quiero	que estudies el derecho.
Ruego	
Deseo	
Te encargo	
Permito	
Te aconsejo	
Te prohíbo	
Ojalá	

- b. 

Quise	que estudiases o estudiaras el derecho.
Rogué	
Deseé	
Te encargué	

Permití
Te aconsejé
Te prohibí
Ojalá

이와 같은 문맥적 분포에 근거하는 Bello의 법체계는 직설법과 접속법의 구분이 독립인가, 아니면 종속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 문장구조상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문을 이끄는 주절 동사의 통사적 특성 *carácter sintáctico del verbo principal*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Rivero(1979a, 64~66)의 통사적 가설은 직설법과 접속법의 구분을 심층구조에서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Rivero에 의하면, 접속법의 심층구조는 주절 동사가 종속절의 동사를 상위에서 지배하는 형상이지만, 직설법의 심층구조에서는 주절 동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다.

(66) *Admite que el ruiseñor canta.*

(67) *No admite que el ruiseñor cante.*

즉, (66)과 (67)의 심층구조는 각각 (68)과 (69)에 해당한다.

(68) *(El ruise or canta) (lo admite)*

(69) *(No admite(el ruiseñor cante))*

따라서, 직설법과 접속법의 심층구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70) *(o2 V2) (o1 V2)*

(71) *(o1 V1 (o2 V2))*

이와 같은 Rivero의 가설은 직설법의 심층구조상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니는데, 하나는 V1과 V2가 도치되어 표층구조와 어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도치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6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적대명사("lo")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한편, Rivero(1979a, 42)의 TN(Transporte de la Negación) 변형규칙은 V2가 접속법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67)의 심층구조인 (69)는 아래의 (72)처럼 변형될 수 있다.

(72) (Admite (el ruseñor no canta))

그러나, 다음의 (73)과 같이 부정된 주절 동사가 이끄는 직설법 구문의 경우에는, TN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층구조가 (68)과 동일한 구조인 (74)가 될 것이다.

(73) No admite que el ruseñor canta.

(74) (El ruseñor canta) (no lo admite)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부정된 주절 동사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문의 법에 대한 인칭적 제약이 부가되는 1인칭 구문들의 심층구조를 살펴보면, 예문 (75)와 (76)은 각각 (77) 및 (78)과 같은 심층구조가 될 것이다.

(75) No admito que el ruseñor cante.

(76)\*No admito que el ruseñor canta.

(77) (No admito (el ruseñor cante)) = (Admito (el ruseñor no canta))

(78) (El ruseñor canta) (no lo admito)

Rivero의 가설에 따르면, 예문 (75)의 경우처럼 종속문에 접속법이 출현하는 문장은 (77)과 같은 심층구조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78)과 같은 심층구조로는 (76)의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Rivero가 설정한 통사적 가설의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Bolinger(1968)와 Terrell(1976)이 적용한 바 있는 CP(Compliment Preposing) 변형 규칙을, 종속문이 직설법이기 때문에 TN 변형이 불가능한 (73)과 (76)에 적용하면, 두 문장은 각각 (79)와 (80)과 같은 비문이 된다.

(79) \*El ruiseñor canta, no admite.

(80) \*El ruiseñor canta, no admito.

즉, CP 변형 규칙을 통한 검증에서는, 화용적 해석에 입각한 인칭적 제약 때문에 비문으로 처리된 (76)과 같은 문장들 뿐만 아니라, 그 문법성이 의심받기는 하지만 특수한 발화상황 속에서 이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73)과 같은 문장도 비문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예문 (73)과 (76)의 경우에는 주절 동사가 직설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Bello가 지적한 바 있는 saber 또는 afirmar를 첨가하여 문법성을 판단해 보면, (81) 및 (82)와 같은 비문이 된다.

(81) \*Sé que no admite que el ruiseñor canta.

(82) \*Sé que no admito que el ruiseñor canta.

한편, (81)과 (82)와 같은 초지배절은 Fukushima(1990, 174)가 연구한 바 있는 FCS(Fenómeno de Cláusulas Superregentes) 현상<sup>11)</sup> 중 아래에 소개하는 (83)과 같은 유형이다.

(83) (V1 ind. ( V2 subj. (V2)))

(83)과 같은 초지배절은 직설법을 이끄는 V1이 접속법을 취하는 V2를 뛰어 넘어 V3에서 직설법을 유도하는 유형인데, 이론상 가능한 유형이지만

11) Fukushima(1990, 174)는 FCS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a. (V1 subj. (V2 ind. (V3)))

b. (V1 subj. (V2 ind. (V3)))

c. (V1 ind. (V2 subj. (V3)))

d. (V1 ind. (V2 subj. (V3)))

이와 같은 4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c)와 같은 유형만이 Fukushima가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도 발견되지 않았다(Fukushima, "Sobre la Cláusula superregente", recogido en *Indicativo y subjuntivo*, ed., Ignacio Bosque, pp. 164~179 참조).

Fukushima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문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지배절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도 문제의 대상인 예문 (73)과 (76)의 비문적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V2가 1인칭인 (82)와 같은 초지배절은 화용적 구조상으로도 (Sé A)(No admito A)와 같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기피되는 구문이 될 것이다.

## V. 결 론

이 글에서는 법의 교호가 이루어지는 구문에서 인칭요소가 문법적 제약이 된다는 것을 화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화용적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사적 근거를 찾아 보았다.

- (A) Creo que no vuelve.
- (B)\*Creo que no vuelva.
- (C) No creo que vuelva.
- (D)\*No creo que vuelve.
- (E) Cree que no vuelve.
- (F) Cree que no vuelva.
- (G) No cree que vuelva.
- (H) No cree que vuelve.

V1이 1인칭이 아닌 (E), (F), (G), (H)의 경우에는, V1과 발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V2의 법의 선택이 V1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발화자의 믿음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어떠한 법의 선택도 허용되며, 문장의 문법성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V1이 1인칭인 (A), (B), (C), (D)의 경우에는, V1과 발화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B)와 (D)는 아래의 (B') 및 (D')와 같은 모순적 화용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문법적으로 비문이 된다.

- (B') Creo A y no creo que A.
- (D') No creo A y creo que A.

(B), (D)와 같이 화용적으로 모순되는 문장들은, 경우에 따라, 종속문을 발화자의 약화된 믿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B), 또는 종속문을 인용으로 간주하는(D) 등의 특수한 발화 상황의 설정을 통하여, 정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으나, 통사적으로는 근거가 없어 생성 자체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B)와 (D)는 아래의 (B'') 및 (D'')처럼, CP 변형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CS 현상으로 간주하여, 초지배 동사 *verbos superregentes*를 첨가할 경우에도, (B''') 및 (D''')와 같은 비문만을 생성할 뿐이다.

(B'') \*No vuelva, creo.

(D'') \*Vuelve, no creo.

(B''') \*Sé que creo que no vuelva.

(D''') \*Sé que no creo que vuelve.

또한, 이와 같이 살펴본 종속문의 법의 교호에 대한 인칭적 제약은 독립 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독립문의 경우에는, 법의 교호를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생략된 주절을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와 같은 생략된 주절은 발화자와 일치하는 “yo abstracto”를 일정하게 취하고 있어, 인칭적 제약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3장의 58, 59 참조).

한편, 이 글에서는 법의 교호가 가능한 구문들인 형용사절, 부사절 및 “el hecho de que”구문 등과 같이 SN에 의해 유도되는 명사절에서도 인칭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소개하기는 했지만, FCS 현상을 이끄는 초지배절의 법의 교호와 인칭 문제도 한번 짚 다루어 볼 만한 과제로 생각한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문어와 구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거쳐 우리가 이 글을 통해,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의 사용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riyoshi, Shunji, 1981, "A note on the Spanish subjun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use in the subordinate clause of verbs of Belief in *DIALOGO DE LA LENGUA*," *Lingüística Hispánica*, Vol. 4, pp. 3~30.
- Bell, Anthony, 1980, "Mood in Spanish: A Discussion of Some Recent Proposals," *Hispania*, 63, pp. 377~390.
- Bello, Andrés,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ACT, Tenerife, Edición crítica de R. Trujillo.
- Bolinge, Dwight,  
(1968), "Postposed Main Phrases: an English rule for the Romance Subjunctive,"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14, pp. 3~30.  
(1974), "One Subjunctive or two?," *Hispania*, 57, pp. 462~471.
- Bustos, Eugenio, 1981, *Pragmática del español: negación, cuantificación y modo*, UNED, Madrid.
- Fernández Ramírez, Salvador, 1986, *Gramática española: 4. El verbo y la oración*, Arco/Libros, Madrid, volumen ordenado y completado por Ignacio Bosque.
- Fukushima, Noritaka, 1990, "Sobre la cláusula superregente," recogido en *Indicativo y subjuntivo* de Ignacio Bosque, Taurus Universitaria, Madrid.
- Gili Gaya, Samuel,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 Lope Blanch, Juan Manuel, 1950, "Algunos usos de indicativo por subjuntivo en oraciones subordinadas," *NRFH* XII, pp. 383~385, recogido en *Indicativo y subjuntivo* de Ignacio Bosque, 1990, pp. 180~182.
- Navas Ruiz, Tomás, 1986, *El subjuntivo castellano*, Publicaciones del

Colegio de España, Salamanca.

Porto Dapena, José, Alvaro,

(1987), *El verbo y su conjugación*, Arco/Libros, Madrid.

(1991), *Del indicativo al subjuntivo: valores y usos de los modos del verbo*, Arco/Libros, Madrid.

Real Academia Española,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Rivero, María Luisa,

(1979a), "El modo y la presuposición," pp. 37~68.

(1979b), "La concepción de los modos en la gramática de Andrés Bello y los verbos abstractos en la gramática generativa," pp. 71~85.

(1979c), "Saber: hacia una gramática de los términos epistemológicos," pp. 113~121, recogidos en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del español*, Cátedra, Madrid.

Ross, J. R., 1968, "On declarative sentences," en J. A. Jacobs y 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Ginn., pp. 222~272.

Salvá, Vicente, 1830,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según ahora se habla*, París, Librería Hispano-Americana.

Takagaki, Toshijiro, 1984, "Subjunctive as the marker of Subordination," *Hispania*, 67, pp. 248~256.

Terrell, T., 1976, "Assertion and Presupposition in Spanish," en Luján y Hensey (eds.), *Current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Togeby, Knud, 1953, *Mood, aspect et temps en espagnol*, Copenhagen.

## Restricciones de la Categoría Persona Gramatical en la Alternancia Modal

Kim, Un-Kyung

En este trabajo se ha tratado de comprobar, aplicando el análisis pragmático, la existencia de restricciones gramaticales impuestas por la categoría persona gramatical en construcciones que admiten alternancia modal y a la vez, se ha intentado buscar fundamentos sintácticos para corroborar la validez de dicho análisis. Hemos basado nuestro estudio en los siguientes tipos de oraciones:

- (a) Creo que no vuelve.
- (b)\*Creo que no vuelva.
- (c) No creo que vuelva.
- (d)\*No creo que vuelva.
- (e) Cree que no vuelve.
- (f)?Cree que no vuelva.
- (g) No cree que vuelva.
- (h) No cree que vuelva.

En las oraciones de tipo e, f, g, h, en las que el V1 no es de primera persona, es decir, cuando el sujeto del V1 no coincide con el hablante, la selección del modo del V2 está influida por la creencia del hablante y no por el V1, consecuentemente, se permite ambos modos sin restricción alguna en la gramaticalidad de las oraciones.

Sin embargo, en las oraciones de tipo a, b, c, d, en las que el V1 es de

primera persona coincidiendo con el hablante, las oraciones b y d se califican como agramaticales por presentar las siguientes estructuras pragmáticas contradictorias.

(b') Creo A y no creo que A.

(d') No creo A y creo que A.

Algunos gramáticos consideran aceptables las oraciones de tipo b y d si se supone que existe una creencia atenuada por parte del hablante sobre la verdad de la subordinada(b), o si se supone que la subordinada constituye la repetición de algo ya dicho por el interlocutor(d). Sin embargo, creemos que la emisión de estas oraciones está restringida por no tener fundamentos sintácticos, a saber, las oraciones b y d no permiten la transformación de la Subida de Complemento como lo comprueban las siguientes oraciones.

(b'') \*No vuelva, creo.

(d'') \*Vuelve, no creo.

Y si añadimos un verbo superregente a las oraciones b y d, tendremos las siguientes b''' y d''' que son también agramaticales.

(b''') \*Sé que creo que no vuelva.

(d''') \*Sé que no creo que vuelva.

Por otro lado, las restricciones gramaticales que impone la categoría persona gramatical en la alternancia modal de las subordinadas desaparecen en las oraciones independientes, ya que, como lo hemos comprobado en el capítulo III, en las oraciones independientes el sujeto abstracto siempre coincide con el hablante. A saber, para explicar la alternancia modal de las oraciones independientes es preferible suponer una oración principal omitida y el sujeto de esta matriz omitida es siempre el "yo abstracto" aun en las oraciones cuya posible matriz



omitida sea de tercera persona (cfr. ejemplo 58b).

En este trabajo hemos descartado la revisión de si puede o no existir restricciones gramaticales impuestas por la categoría persona en las oraciones subordinadas adjetivas y adverbiales y las sustantivas introducidas por un sintagma nominal de tipo “el hecho de que.” Aunque aquí se ha hecho una presentación parcial, sería interesante estudiar las relaciones de la persona gramatical y la selección del modo en las cláusulas superregentes. Otro trabajo interesante sería el de comprobar cómo repercuten nuestros análisis en los diferentes tipos de comunicación, es decir, hace falta la realización de un trabajo de campo para comprobar los resultados obtenidos en este estudio.